

문서번호	세무과-6539
결재일자	2016.2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세외수입팀장	세무과장	기획재정국장	
최지속	송상훈	정장섭	02/26 이상형	
협 조				

---

- 세입 목표달성 및 시세외수입 평가 대비 -

## 2016년 세외수입 종합계획

---

2016.2.26.

강 북 구  
(세 무 과)

- 세입 목표달성 및 시세외수입 평가 대비 -

# 2016년 세외수입 종합계획

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시세외수입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·징수 및 체납관리로 2016년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I 추진개요

- 추진근거 : 2016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(서울시 세무과-3287)
- 추진기간 : 2016. 3 ~ 2016.12
- 추진목표

### 세입 목표달성

300억 징수목표 달성  
(2015년 결산대비 45억증가)

### 시세외 인센티브 수상

시세외수입분야 우수 자치구 수상  
(2015년은 5월 평가예정(절대평가))

## II 2016년 예산 및 2015년 결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2016년 예산(a)	2015년				예산대비 증감 (a-b)	결산대비 증감 (a-c)	
		예산(b)	결산(c)	증감(c-b)	진도율 (c/b)			
구세외수입 총계	29,951	23,438	25,427	1,989	108.5	6,513	4,524	
경상적 세외수입	소 계	22,880	17,389	18,601	1,212	107.0	5,491	4,279
	재산임대수입	417	424	413	-11	97.4	-7	4
	사용료수입	7,722	7,501	7,343	-158	97.9	221	379
	수수료수입	6,834	1,925	2,135	210	110.9	4,909	4,699
	사 업 수 입	330	320	362	42	113.1	10	-32

	징수교부금수입	6,614	6,114	7,207	1,093	117.9	500	-593
	이 자 수 입	963	1,105	1,141	36	103.3	-142	-178
임시적 세외수입	소 계	7,071	6,049	6,826	777	112.8	1,022	245
	재산매각수입	1,623	1,623	1,409	-214	86.8	0	214
	부 담 금	15	8	57	49	712.5	7	-42
	과징금및과태료등	1,724	1,632	1,834	202	112.4	92	-110
	기 타 수 입	1,581	815	1,164	349	142.8	766	417
	지난년도수입	2,128	1,971	2,362	391	119.8	157	-234

### 2015년 결산은 세입목표 234억원 대비 254억원 징수(20억원 초과달성)

- ▶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억원(증지수입,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) 증가, 징수교부금수입 10억원 증가 등 세입목표 174억 대비 186억 증가로 총 12억원 증가하였으며,
- ▶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2억원 감소하였으나, 과징금 및 과태료 등(2억원), 기타수입(3억원), 지난년도 수입(4억원)이 증가하여 총 7억7천만원 증가함.

### 2016년 세입 예산 299억원 (전년 결산 대비 45억원(17.8%)증가)

- ▶ 주요 증감 요인
  - 수수료수입 49억원 증가
    - 쓰레기봉투판매수입 48억원 증가
      - ⇒ 봉투가격 인상 및 판매수입 세입처리 방식의 변경
  - 징수교부금수입 5억9천만원 감소
    - 부담금징수교부금 2억8천만원 감소
      - ⇒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
    - 사용료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, 시세징수교부금 8천만원 등 감소
  - 이자수입 1억8천만원 감소 ⇒ 예금 평균 보유액은 비슷하나 금리 하락으로 감소
  - 기타수입 4억 증가 ⇒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2016년7월 이전하게되어 기존 전세금 6억원 세입처리 예정

### III 시세외수입 인센티브 개요

- 평가기간 : 2016. 1. 1 ~ 2016. 12. 31
- 지원규모 : 미정 (2015년 기준 5억원 - 수상구 균등 1/N 지급)
- 평가방법 : 절대평가  
(목표점수 90점 : 14개구 이하 → 14개구 시상, 21개구 이상 → 20개구 시상)
- 지난실적 : 2014년회계년도 노력구 수상 (지원금 3천만원)  
※ 2015년회계년도 - 2016년 5월 평가 예정
- 인센티브 평가항목

구분	평가기준	배점	비고
현년도 징수실적	징수율(35), 신장율(4), 채권확보실적(6)	45	
과년도 징수실적	징수율, 신장율, 채권확보실적, 결손실적	35	
세입행정처리실적	세입운영실적, 세외시스템 정리실적 등	10	
정부합동평가실적	과태료 징수율, 신장율, 영치실적	10	특별회계포함

#### ■ 시세외수입 2015년 과목별 결산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부과	징수	결손	체납	징수율	채권확보율	주요부서
시 세외수입	1,664	1,437	-	227	86.3	56.1	
경상적 세외수입	1,407	1,370	-	37	97.3	2.3	
	재산임대수입	41	41	-	99.9	-	재무과
	도로사용료	1,337	1,314	23	98.2	5.2	건설관리과
	기타사용료	29	15	14	51.9	-	건설관리과
임시적 세외수입	257	67	-	190	26.1	66.7	
	재산매각수입	22	16	6	75.6	-	재무과
	도로변상금	43	32	11	74.0	-	건설관리과
	지난년도수입	192	19	173	9.7	73.0	세재무과

- ▶ 2015년 결산액은 전년 대비 3억원 감소한 14억4천만원이며, 주요 원인은 시유재산매각수입의 3억9천만원 감소임.
- ▶ 시세외수입 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위해서는 징수율이 가장 중요하지만,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구에서는 현년도 채권확보율이 타 자치구와 차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되며, 현년도 주요 체납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 등의 적극적인 채권확보가 요구됨.

## IV 업무 추진 방향 (구·시세외수입)

세입 목표 달성, 시세외수입 평가 우수성적 거양

세외수입 부서	세 무 과	
<p>[ 현 년 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과·징수 업무 철저</li> <li>• 신규 재원 발굴</li> <li>• 독촉 및 채권확보 철저</li> <li>• 이월체납 최소화</li> <li>• 과태료 집중관리(정부합동평가대비)</li> </ul>	<p>[ 지난년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극적 징수활동</li> <li>• 고액체납자 관리 및 결손처분 (주택과,재무과 공통)</li> <li>• 번호판영치 강화</li> </ul>	<p>[ 총 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합계획 수립</li> <li>• 부서 업무 지원 (직원교육, 부서지도점검)</li> <li>• 징수대책보고회 개최</li> </ul>

## V 세부추진계획

### ■ 세외수입 총괄 관리 (세무과)

-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(10월 예정)
  -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보고 및 대책 수립
  - 대상 : 체납 규모 및 징수율 고려 12개 이상 부서(담당 및 담당팀장 참석)

「세외수입 직무교육」을 통한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 (7월 예정)

- 교육 대상 : 세외수입 신규업무 담당자 및 신청자

- 교육 내용 : 세외수입 부과·징수 업무 관련 규정

세외수입 체납 실무 및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전산 교육

「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」을 통한 징수실태 점검 (10월 예정)

- 점검 대상 부서 : 체납 규모 및 징수율 고려 5개 이상 부서

- 점검 방법 :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사전 전산 점검 및 방문 실태점검

- 점검 내용 • 세외수입 부과·징수 제반사항, 독촉장 적기발송 여부

• 세외수입징수시스템 미처리업무의 처리 유무

• 부서별 징수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

• 적기 채권확보 여부

매월 현재 징수보고 마감후 징수실적 분석

- 징수·진도율 및 특이사항 파악, 체납 규모 인지

세외수입 부서와 유기적 협조 관계 강화

- 현년도 체납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결과 현행화  
(부동산 재산에 대한 토지관리시스템 조회결과 월단위 업로드)

- 독촉장 발송, 압류 업무 등 상시 교육 및 지원

**■** 현년도 부과·징수 및 체납 징수 활동 (세외수입 담당부서)

세입 목표 달성 및 체납 징수를 위한 부서별 징수 계획 수립

세외수입 부과·징수 철저

- 납부자번호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

- 관련 개별법에 대한 숙지로 누락세원 방지 및 적정 과세

- 반송분 고지서 공시송달 등 사후관리 철저(고지서 재발송, 전화독려 등)
- 새로운 재원의 조사·발굴로 세입 증대
- 세외수입징수시스템 미처리업무 처리 철저 (인센티브 평가항목)
- 연도폐쇄기한 단축을 고려한 부과 및 징수 관리

적극적인 현년도 체납 징수활동

- 적기 독촉장 발송 및 체납고지서의 주기적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
- 독촉장 발송시 체납처분 예고 안내문 동봉하여 발송
- 독촉후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적기 채권 확보
-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부 작성 및 집중 관리  
(분납 안내 등 납세자별 납부계획에 따른 징수독려 및 주기적 관리)
-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실시
-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(일반·특별회계) 징수 집중관리

**■** **지난년도 체납 징수활동 (세무과, 재무과, 주택과)**

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

- 부동산·차량·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추진
- 대상 :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소유자 및 압류실익이 없는 기압류재산 소유자, 채권확보가 누락(예:압류후 차량 말소)된 재산 소유자 등

체납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시

- 영치목표 : 1,900대 (10억원 영치)  
정부합동평가 대비 목표 상향조정 (전년대비 900대 증가)
- 영치대상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
- 영치요건 : 과태료체납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
- 근거법령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

- 야간영치활동 및 관외 출장 영치 강화
- 타구 체납차량 영치를 통한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증대

결손처분 일제정비

- 대상
  - 체납처분이 종결되고,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
  -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,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
- 사후관리 : 결손처리된 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하고,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 실시

## VI

## 행정사항

- 세외수입 부서 자체 계획 수립
- 직원 교육, 지도 점검, 징수대책보고회 등 협조
- 매월 징수보고 기일 엄수 (제출일 매월 개별 통보)